

2024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안내

I. 자살예방 교육의 필요성

한 사람의 자살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지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며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2022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10만 명 당 사망률 23.8명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3위의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중 제천시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6.7명으로 충청북도 전체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울증의 특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살위험신호를 파악하여 주변에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했을 때 전문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II. 세부 진행 내용

1. 교육 일시 : 2024년 6월 ~ 11월
2. 교육 내용 :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교육명		교육 대상	교육 내용	소요시간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형	성인	· 보기 :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 확인 · 듣기 : 실제 자살 생각을 묻고 죽음의 이유와 삶의 이유 경청 · 말하기 : 안전점검 목록을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도움 의뢰 ※ 교육대상 별 사례영상 및 위험요인의 차이가 있음.	120분
	청년	청년		60분
	중년	중년		
	노인	노인		
이어줌인		직장인	· 한국 직장인의 현황 · 자살의 위험요인 및 자가평가 · 자살신호 및 자살예방 TIP	60분
		노인	* tv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2016) 활용 · 노년기에 흔히 겪는 어려움 · 자살의 위험성 살피기 · 자살생각 묻기 · 도움 요청하기	50분
생명 배달		성인 및 노인	· 자살 현황 · 자살에 대한 이해 · 생명지킴이 활동 4단계 (생생하게 보기, 명확하게 묻기, 배려 깊게 반응하기, 달라지도록 돕기)	60분

Ⅲ. 신청 준비

1. 신청기관은 교육 일시, 장소, 교육 인원을 계획하고, 장소·시간 등이 확보된 상태에서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함.
2. 준비사항 : 교육장소, 노트북, 포인터, 빔 프로젝트, 동영상 시청을 위한 음향시설.
3. 교육 방법 : 대면 및 비대면

Ⅳ. 교육 신청 방법

1. 협조문 작성 : 각 기관의 협조문 양식에 일시, 장소, 대상을 기입.
2. 신청서 작성 : 작성한 신청서를 협조문과 함께 첨부하여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메일 jcmind1004@naver.com 혹은 팩스(043-646-3076) 발송.
온라인 :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이용신청-교육 및 프로그램 신청

3. 담당자 연락처 : 자살예방팀 박수연 ☎ 070-7778-1650

※ 교육 일정 중복 신청 방지 및 일정 조율을 위해 교육 협조문 작성 전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신청서 』

기관명			
신청일자			
대상 및 인원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대상자	총	명
교육 장소			
신청자 성명		연락처	
신청 교육	<input type="checkbox"/> 보고 듣고 말하기 2.0 기본형 <input type="checkbox"/> 보고 듣고 말하기 2.0 청년 <input type="checkbox"/> 보고 듣고 말하기 2.0 중년 <input type="checkbox"/> 보고 듣고 말하기 2.0 노인 <input type="checkbox"/> 이어줌인 직장인 자살예방교육 <input type="checkbox"/> 이어줌인 노인 자살예방교육 <input type="checkbox"/> 생명 배달		
<이용방법>			
<p>○ 생명지킴이 교육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듣고 말하기, 이어줌인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http://www.spckorea.or.kr) - 생명 배달 :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http://cpmhc.yesbni.com/sub.php?menukey=74) <p>○ 교육순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는 순으로 우선 지원예정입니다.</p> <p>○ 신청서 접수는 이메일 jcmind1004@naver.com 혹은 팩스(043-646-3076) 발송,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로 받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홈페이지 :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이용신청-교육 및 프로그램 신청 <p>○ 문의사항은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주세요. Tel.043-646-3074~5 / Fax. 043-646-3076</p> <p>○ 신청 교육 란을 보시고 원하시는 자살예방교육을 꼭 기입해주세요.</p>			
2024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귀하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안내

1. 자살예방 교육 의무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자살예방법 제17조
 -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

-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교육 :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
 - 가. 자살문제와 현황
 -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3. 교육 의무대상

구분	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및 국방·소방·경찰 기관의 장 및 소속직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 중, 고등학교) - 학생 및 교원·교직원
그 외	자살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30인 이상 사업장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이 하나라도 가입된 모든 근로자 기준(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